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4-1-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는 학생처에 두며, 센터장은 관련 전공분야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7.16).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③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시 겸직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증진위원회) ① 센터운영과 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규정 제·개정 및 폐지
3. 장애학생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주요사항
6. 장애학생 도우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 차별사건에 관한 사항
8. 기타 센터운영 및 장애학생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령,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07.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범위) 직제규정 제25조(타 규정 적용) 및 전략기획18-0656(2018.07.16.) ‘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안) 보고’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제1항 중 “교학처”를 “학생처”로 한다.